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산업의 지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첨단산업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내에 정주할 의사가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라. 외국에서 한 행위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한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

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본다.

제5조(사내대학원의 교육비용 부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교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6조(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7조(사내대학원의 교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교사(校舍)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로 본다.

제8조(사내대학원의 교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교원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9조(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10조(사내대학원의 학년도·학기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학년도·학기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2.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 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제11조(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12조(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학원” 및 “학교”는 각각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13조(사내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으로 본다.

제14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는 “석사학위”로, “학사학위과정”은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으로, “학사학위”는 “박사학위”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위논문 제출, 심사 및 공표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대학 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45조 중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50조제1항 중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본다.

제15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사내대학원의 폐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폐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하고 있을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3명 이상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7명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업: 10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의인력(비상근 강의인력을 포함한다)을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하고 있을 것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위한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4.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5.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2. 교육프로그램 내용
3.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4.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 기업의 조직도
6.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의 조직도
7.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된 기업(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하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⑦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실적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3백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가. 첨단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첨단산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에 180일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4.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3.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된 자(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2.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기업 컨설팅 사업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첨단산업 분야별로 각각 3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2.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 지원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양성인과 인재혁신전문기업 간의 연계 지원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한다.

제21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된 자(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전문양성인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2. 전문양성인과 교육기관등과의 연계 지원
3. 전문양성인의 첨단산업인재 교육역량 강화 지원
4. 전문양성인의 취업 지원
5.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활용 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공유 지원)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2.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공유 시 보안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23조(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사업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문양성인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
2. 전문양성인과 기업, 대학 등 간의 연계 지원 사업
3. 첨단산업인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이하 이 항에서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자율규약 참여 동의서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첨단산업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
2.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인재혁신협의체)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본다.

제28조(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종별 고용 동향 및 고용 현황
2. 업종별 인력양성기관 현황
3. 해외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동향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보의 수집,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기업종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기업종(이하 “위기기업종”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첨단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첨단산업 업종별로 구분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 규모, 인재 현황, 산업의 위기 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위기기업종의 지정 필요성과 인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기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기기업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2. 교육기관등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3. 위기기업종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 장비 등 지원
4. 타 업종 근로자의 위기기업종 재취업 지원
5. 위기기업종의 인재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위기기업종의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31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첨단산업 분야 기업 근로자를 위한 교통기반 향상 및 편의시설 확대 지원 사업
2.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사업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첨단산업 청년·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등과 연계한 국제 교류사업 지원
2.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제33조(첨단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업 직원에 대한 재교육 지원 사업
2. 대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인재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별·기술별 해외인재 분포 현황
2. 외국의 해외인재 유치 정책·제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해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관과의 교류 지원
2.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인재혁신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국내 정주 여건 및 근무환경 홍보
3. 국내 기업의 해외·온라인 채용활동에 대한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학교”라 한다)의 취학에 필요한 지원
2. 외국인학교의 정원 외 입학 허용
3.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학비 지원
4.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 간 교류 지원
5.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국내 주택 임대차 제도 관련 상담, 중개 등 지원
2. 그 밖에 우수 해외인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선정

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기간
2.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수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우수인재에 대한 장려금 지급
  3.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홍보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양성 체계의 구축 정도
2. 해당 기업이 양성한 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인재양성에 기여한 정도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의 선정 절차 및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장 보칙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기업종의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인재의 활용 현황 실태조사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한 조사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8.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9. 제28조제3항에 따른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인재혁신센터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제6장 벌칙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br>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br>위반 |

|                                                                                                |              |     |     |     |
|------------------------------------------------------------------------------------------------|--------------|-----|-----|-----|
| 가. 법 제4조제2항(「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1호 | 150 | 250 | 500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2호 | 150 | 250 | 500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3호 | 150 | 250 | 500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4호 | 150 | 250 | 500 |
|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5호 | 150 | 250 | 500 |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6호 | 150 | 250 | 500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
| 연 락 처            | (044) 203 - 4221 |